

# 여신거래용 인감 명판 등 신고서(기업용)

담 당	대 리	차 장	부점장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본인이 귀행과의 여신과 관련한 모든 거래에 사용할 거래용 인감(또는 서명), 명판 및 대표자 등을 아래와 같이 신고(변경신고) 하며, 신고(변경신고)된 바에 따른 일체의 거래에 관하여는 여하한 사유를 불문하고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으며, 아울러 본 신고서 이면에 기재된 제 조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신 고 인 상 호 (전화번호 )  
 주 소  
 대표자(본인자필) (인)

인감대조

신 고 사 항	구 분	신 규(또는 변경전)	변 경 후
상 호			
대 표 자			
주 소			
명 판			
거래용 인감 또는 서명(서명을 병용한 경우 및 외국인에 한함)			

1. 신고된 인감(또는 서명) 및 명판이 귀 은행이 사무취급상 보통의 주의로써 대조한 후 상위없음을 인정하여 거래를 한 경우 에는 동 관계서류 또는 인감 및 명판의 도용 위조 변조 또는 기타 사유등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전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귀행에 대하여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2. 귀행에 신고한 상호 대표자 주소 명판 거래용인감(또는 서명)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귀행에 변경사항을 제출하겠으며, 만약 본인이 이를 해태하여 변경전 사항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거래가 유효한 것으로 한다.
3. 귀행에 신고한 인감 및 명판에 대하여 분실 멸실 도난 또는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를 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본인이 전 책임을 지기로 한다.
4. 위와같은 신고 등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본인이 전 책임을 지기로 한다.

- 붙 임 : 1. 인감증명서  
 2. 상업등기부등본(법인기업의 경우)  
 3.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기업의 경우)

